

#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대책(안)

## -동력자원부-

**정부는** 국제수지 흑자시대를 맞아 올해부터 오는 96년까지 10년동안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모두 1조5천억원을 투자토록 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현재 허가제로 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관리방식을 신고제로 바꾸고, 각종 융자금의 금리도 현행 8%에서 6%로 낮출 방침이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대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중 보조금, 광업진흥공사의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석유사업기금,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자금과 기업들의 자기자금을 포함, 8백39억8천7백만원의 해외개발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비롯, 오는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모두 1조5천5백21억8천4백만원의 재원을 확보, 1단계로 오는 91년까지 석유 25, 유연탄 34, 우라늄 14건 등 모두 1백35건의 신규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광물의 개발수입비율을 석유·무연탄·동광석·철광석·아연광 각각 20%, 유연탄, 우라늄 각

각 30%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대책

### I.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대책

#### 1. 해외자원개발심의회 개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본대책방향을 심의회에 상정

- 회의일시 : 87. 6. 2

- 심의회위원 : 경제기획원 정책조정국장등 14명 (회의 주체 : 동자부 차관)

○기본대책방향을 검토, 확정한 후 세부시행방안은 관계 기관과 협의·추진하되, 1단계 예산소요사업비는 88 예산 요구에 반영

#### 2.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추진현황

	개발사업	탐사사업	계	투자금액 (천달러)	진출 지역	참여 회사
石油	3	3	6	267,086	인도네시아, 北예멘, 美國, 수단, 브라질	코데코에너지, 油開公, 油 公, 대신석유, 럭키금성
유연탄	5	2	7	187,649	美國, 호주, 캐나다, 인도 네시아	포철, 현대, 대성, 선일상 선, 한·인도네시아, 럭키 금성
우라늄	-	2	2	4,458	캐나다	韓電, 大宇
계	8	7	15	459,193	7 개국	12개 업체

87년 4월 말 현재, 6개국에 9개 사업(5개광 중) 신규 진출 검토중

### 3.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대책 개요

#### 가. 해외자원 중·장기 종합추진대책 수립

- 적정한 개발수입목표 설정 및 합리적 투자계획 수립
- 국내·외 새로운 경제여건을 감안한 수급전망의 재분석과 이에 의거한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의 연동화(87년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사업으로 추진)

#### 나. 해외자원개발정보 종합관리기능의 강화

##### (1) 단기대책

- 전문기관별(鑛振公, 油開公,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체계 업무의 효과적인 분담체계 확립
  - 자원개발과 관련한 개별적인 전문기술 정보는 자원별로 유개공과 광진이 전담
  - 자원정세의 추이 등 일반적인 경제정보자료는 에너지

##### (3) 稅制지원제도의 개선

	현 행	개 선 안	비 고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서 외화수입 금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 공제	○ 조감법 20조(해외건설업 및 산업설비수출사업)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20% 손금산입	25% 손금산입	○ 일반해외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해외광물투자사업에 대한 혜택이 상대적으로 축소

##### (4) 보험지원제도의 개선

- 담보위험의 범위를 현행의 비상위험 외에 신용보험까지 확대

##### 다. 각종 지원제도의 개선

###### (1) 융자지원제도의 개선

- 융자조건의 개선(日本수준으로의 접근)

	현 행		개 선 안		관련기관
	이자율	상환조건	이자율	상환기간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鑛 振)	8 %	5년거치 10년상환	6 %	5년거치 15년상환	경제기획원 재무부
석유사업기금 (油 開 公)	8 %	8년거치 18년상환	6 %	8년거치 18년상환	경제기획원 재무부
해외투자자금 (수출입은행)	8 %	3년거치 10년상환	6 %	5년거치 20년상환	재무부 수은은행

○ 해외광물자원개발기금 조성 확대(87년 90억원→91년 500억원)

(2) 보조지원제도의 개선

○ 지원대상의 확대(해외광물자원 조사사업규정 개정)

(현 행)

정보관리비

(추 가)

현행 지원사업의 확대

광업사정조사

광산조사

직접시추비

시추비 전액

사전타당성 평가비

국내반입, 우선구매에 따른 결손비

○ 소요자금의 증액확보(87년 11. 5억원→88년 15.3

억원)

#### 라. 해외자원 개발사업법의 개정

	현 행	개 정
해외자원 개발사업 절차의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제도상 동자부와 韓銀에서 각각 별도의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이중 절차적인 부담이 있음.</li> <li>- 허가신청 이전의 사전신고제 존재</li> <li>- 해외자원 개발사업심의회 심의 및 관계부처 협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제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수리기관의 보완·조정 요구가 없는 “신고”만으로 유효(유사입법례: 외자도입법 제23조에 의한 기술도입 제도)</li> <li>- 사전신고제 폐지</li> <li>- 해외자원 개발심의회 관계부처 협의 생략 가능</li> <li>-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유화로 나가기 위한 사전제도임.</li> </ul> </li> </ul>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및 우선구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권고(입법사항) 및 우선 구매권고(시행령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에 따라 발생한 손실보전 규정이 없음.</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입 및 우선구매권고의 입법사항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고에 따라 발생한 손실보전규정 신설</li> <li>- 우선구매권고 대상자에 민간실수요자 및 단체 포함</li> </ul> </li> </ul>
해외자원개발 기금 재원의 추가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금의 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출연금</li> <li>- 기금운용 관리기관의 출입금</li> <li>- 해외자원 개발사업자의 출입금</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가확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물등 지하자원의 수입관세중 일부 (유사입법례: 석탄산업법 제26조)</li> <li>- 성공분 보조지원금의 상환금</li> </ul> </li> </ul>
해외자원 개발사업 대상에 스와프방식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규정을 염격히 해석시, 스와프에 의한 해외개발은 곤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와프를 허용하므로서 투자 대상국에 대한 제한을 없앰</li> </ul>

장한희생 값진공훈

정성모아 예우하자